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05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윤영석 · 김태호 · 임종득
박성민 · 추경호 · 박대출
이종배 · 김미애 · 한기호
김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상속(증여)공제 제도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 기간 및 기업 규모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가업을 이어나감으로써 기업의 영속성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임.

한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3.6%는 현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국세·지방세 등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응답기업 10곳 중 6곳은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가업 승계 관련 공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면 지방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며, 관련 혜택이 확대되면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음.

이에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

점 등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현행 가업상속공제 금액인 가업 영위 기간별로 3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공제금에서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주고자 함(안 제30조의6제1항제4호 신설).

다만,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본사 또는 주사무사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도권으로의 재이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0조의6제3항제3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나 내국법인이 수도권역 밖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위 각 호의 공제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신 설>

② (생략)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row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lines. The first row has a small black dot at its right end, serving as a starting point for writing. The rest of the page is blank, providing space for practicing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1. ~ 3. (현행과 같음)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나 내국법인이 수도권역 밖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위 각 호의 공제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 2. (생략)

<신 설>

④ ~ ⑧ (생략)

③

1. · 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④ ~ ⑧ (현행과 같음)